

(별지) 2005나84701

증인 정봉화 신문사항

1. 증인은 퇴임 후 현재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명예교수로 있지요.

1-1. 1995년 1.초경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전체교수가 원고 김명호 조교수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제출할 당시 증인은 수학과 학과장으로서 위 징계절차에서 징계청원사유 및 징계의결요구를 위한 관련 증빙자료제출을 직접 처리하여 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요.

(을제6호증의 3 내지 6 제시)

2. 이것은 증인이 1995. 6.경 원고의 징계청원사유에 대한 보충설명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작성한 것이지요.

3. (을제6호증의 3 제시) 이것은 위 징계청원사유 중 해교행위에 대한 보충설명이지요.

3-1. 원고가 1993.부터 1995.까지 3, 4학년 학생들에 대한 정규 수업 중 위 학생들에게 “성대 대학원에는 오지 말라”라는 말을 하였고 그에 대한 근거로 본과 3, 4학년생들을 증인으로 들고 있는데,

(가) 여기서 위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요.

(나) 원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시간과 장소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인가요.

3-2. 원고가 1993. 교수 모임 자리에서 동료교수에게 “성대 대학원에 오면 무엇 하나 취직도 못할텐데”라는 말을 하였고, 그에 대한 근거로 본과 L., C., L.교수를 증인으로 들고 있는데,

(가) 여기서 위 L., C., L.교수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요.

(나) 원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시간과 장소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인가요.

3-3. 원고가 1994. 학기초 k교수에게 인사 온 신입 교수 앞에서 “성대 수학과가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학과를 파괴하는데 동참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에 대한 근거로 본과 K, C. 교수를 증인으로 들고 있는데,

(가) 여기서 위 K, C. 교수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요.

(나) 원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시간과 장소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인가요.

3-4. 원고가 1993. 1학기 집합론 수업시간 중에 3학년 학생에게 “성대 수학과 대학원생들은 죽정어들이다”라는 말을 하였고, 그에 대한 근거로 전체 3학년생 및 대학원생들을 증인으로 들고 있는데,

(가) 여기서 위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요.

(나) 원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시간과 장소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인가요.

3-5. 원고가 입학시험 채점 업무시 배타적인 태도로 혼란을 야기하였다고 하고 되어 있는데, 위 채점업무와 관련한 원고의 태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요.

4. (을제6호증의 4 및 을제7호증의 2 제시) 을제6호증의 4는 위 징계청원사유 중 학사질서문란행위에 대한 보충설명이고, 을제7호증의 2는 수학과가 1995. 9. 13.자로 작성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원고의 징계사유요약설명서이지요.

4-1. 원고가 1994. 1학기 전공 필수 과목인 위상수학 집합론 수업 중 3, 4학년 학생들에게 “수강신청만 하면 수업은 안 들어도 D학점은 보장해 준다”라고 말하였고, 그에 대한 근거로 3, 4학년생 및 최근 졸업생 전원을 증인으로 들고 있는데,

(가) 여기서 위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요.

(나) 원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시간과 장소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인가요.

4-2. 원고가 1991.부터 1994.까지 사이에 주 2 내지 4회만 출근하면서, 출근 시간은 거의 언제나 오후 2시이고, 출근 후에도 연구실 출입문에 ‘재실’이 아닌 ‘교내’로 표시해 놓고서 특정한 사람만 연구실에 불러들였고, 그에 대한 근거로 수학과 전원을 증인으로 들고 있는데, 여기서 수학과 전원이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요.

4-3. 원고가 1991.부터 1995.까지 사이에 단 한번도 한 학기에 9학점 이상 강의한 적 없고, 강의시간도 대부분 7, 8, 9교시로 요구하거나 이를 임의로 변경하였고, 그에 대한 근거로 교무과 시간표 담당을 증인으로 들고 있는데, 여기서 교무과 시간표 담당이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요.

4-4. 원고가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않은 학생에게 A학점을 부과하고 성실히 출석해 온 학생에게 D, F학점을 주었고, 그에 대한 근거로 폐강과목 담당자 및 89학번 LKJ를 증인으로 들고 있는데, 여기서 폐강과목 담당자 및 89학번 LKJ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요.

4-5. 매년 학생들이 원고의 수업을 피하여 다른 시간으로 수강 변경 및 취소를 계속하고, PC통신에서조차 “김 모교수의 수학을 수강하지 말라”는 선배들의 권유도 많이 있는 형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와 같이 수강변경 및 취소를 계속한 학생들과 PC통신에서 수강을 만류한 선배들이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요.

5. (을제6호증의 5 및 을제7호증의 2 제시) 이것은 위 징계청원사유 중 타교수비방 해위에 대한 보충설명 및 요약설명이지요.

5-1. 원고가 1993.부터 1995.까지 사이에 수업시간 중 학생들에게 다른 교수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였으며, 1993. 2학기 수학과 외부 연사 강연 후 다방에서 수학과 교수들에게 “원로 교수는 학생들이 포기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였다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수학과 학생들 및 L., C., L.교수를 증인으로 들고 있는데,

(가) 여기서 위 수학과 학생들 및 L., C., L.교수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요.

(나) 위 수업시간 중에 원고가 학생들에게 다른 교수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였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다) 원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시간과 장소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인가요.

5-2. 원고가 1994. 11.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대외비인 인사 문제 등에 관한 회의 내용이어서 학생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다가 총원계획도 없는데도 해석학 교수가 내정되었다고 하였으며, 학과 교수회의 내용을 즉시 학부 학생들에게 공개하였다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수학과 전체교수 및 학생들을 증인으로 들고 있는데,

여기서 위 수학과 전체교수 및 학생들이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요.

5-3. 원고가 1993. 겨울방학 중 학생에게 “당신도 모 교수 신자인가”라는 말을 하였으며, 그에 대한 근거로 K.H.K. 학생을 증인으로 들고 있는데,

(가) 여기서 위 K.H.K. 학생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요.

(나) 원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시간과 장소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인가요.

5-4. 원고가 1994. 1학기 집합론 시간 중 3학년 학생 전원에게 원고 강좌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고, 다른 과목의 중요성을 축소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1995.1.경 원고의 전공 분야가 제일 고급이라는 피문서를 누군가가 학과 사방에 붙여놓았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3학년생 및 전체 수학과인을 증인으로 들고 있는데,

(가) 여기서 위 3학년생 및 전체 수학과인이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요.

(나) 원고는 집합론 시간 중 원고 강좌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고 다른 과목의 중요성을 축소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위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요.

(다) 누군가가 학과 사방에 붙여놓았다는 위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5-5. 원고가 “그 교수는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 쫓아 내야한다”고 학생을 선동하였으며, “지금까지 배운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만 배워라”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시간과 장소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인가요.

6. (을제6호증의 6 및 을제7호증의 2 제시) 이것은 위 징계청원사유 중 교육자로서

의 자질의혹에 대한 보충설명 및 요약설명이지요.

6-1. 원고가, 그의 강좌가 폐강위기에 있자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전혀 출석 없이 학점을 보장하는 행위를 하였다는데, 여기서 원고가 하였다는 학점을 보장하는 행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요.

6-2. 원고가 1994.2학기 위상수학Ⅱ 수업 중 4학년 학생들에게 “학점은 학생의 인간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으며, 그에 대한 근거로 4학년 학생들을 증인으로 들고 있는데,

(가) 여기서 위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요.

(나) 원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시간과 장소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인가요.

6-3. 원고가 1991.부터 1994.까지 사이에 1995. 1학기 위상수학 수업 및 수학과 동아리인 시그마에서 학생들에게 “씨팔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4학년 학생 및 위 동아리 소속 학생들을 증인으로 들고 있는데,

(가) 여기서 위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요.

(나) 원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시간과 장소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인가요.

6-4. 원고가 1991.부터 1995.까지 사이에 박사과정학생은 단 한 명도 받지 않고, 배출한 적도 없으며, 받을 계획도 없다고 공언하였고, 배정된 석사과정 학생 중 우수한 학생은 타교로 보내었으며, 단 한 명의 석사과정 학생만을 지도하였다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전체교수 및 대학원생을 증인으로 들고 있는데,

(가) 여기서 위 전체교수 및 대학원생이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요.

(나) 원고가 위와 같은 말을 언제, 어디서 공언하였는가요.

6-5. 원고가 1994. 가을 공식 학과회의 전체교수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로 교수들에게 “말 같지 않은 말 말아요”라는 말을 하였다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전체교수를 증인으로 들고 있는데,

(가) 여기서 위 전체교수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요.

(나) 원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시기와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6-6. 원고가 “나는 대인공포증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였고, 1994. 위상수학Ⅱ 과목에 대하여 “수강신청만하면 수업에 참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준다”고 말하였으며, 출석을 하지 않고 A+학점을 받은 학생도 있고, 3학년 전공필수 과목인 집합론 과목에 대하여 “수업에 참석하지 않아도 미리 이야기하면 D학점은 주겠다”라고 약속하였으며, “교생실습은 방학 때 나가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고 있는 바,

여기서 원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시기와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7. (을제7호증의 2 제시) 이 징계사유요약설명서의 기재 내용 중 원고가 공공연하게 “학과를 파괴하겠다”, “수학과를 파괴하는 데 동참하라”, “수학과가 망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고 있는 바,

여기서 원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시기와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8. (을제10호증의 1 내지 3 제시) 이것은 수학과 교수일동이 1995. 11. 30. 위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공문으로 교원징계위원회 6차 회의용 보충자료요청에 대한 확인진술 및 그 증거에 관한 자료이지요.

8-1. 원고가 1992. 12. 학과 교수회의 석상에서 “앞으로 학과교수회의에는 참석 안 할 것과 학과의 작은 일에는 모두 열의 시켜주기 바랍니다”라고 통보하고, 그 후로는 학과교수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원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시기와 장소, 경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가요.

9. (을제6호증의 1 제시) 이것은 1995. 6. 29. 증인을 포함한 수학과 교수 6인이 당시 원고가 담당했던 수학과 4학년 전공필수과목인 위상수학1을 수강한 수학과 4학년생들의 시험거부 건과 관련하여 교수들의 인지사항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낸 공문이지요.

9-1. 원고는 중간고사 과정에서 교생실습을 나간 학생들이 수업을 못 받은 범위에 서 문제를 출제하여 많은 학생들이 점수를 잘 받지 못하게 하였다는데, 여기서

중간고사 문제출제와 관련된 원고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가요.

9-2. 원고가, 위상수학1 시간에 “교생실습을 나간 학생들은 대부분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이더라”라는 말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자 학생들에게 사과하였다는데, 여기서 원고가 위와 같은 말 및 사과를 한 시기와 장소, 경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가요.

9-3. 원고가 학기말고사가 실시되기도 전에 수업시간에 “5명 정도는 학점을 주지 않아 졸업을 안 시키겠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여 학생들을 불안으로 몰아갔다고 하는데, 여기서 원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시기와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9-4. 학생들이 비교육적이며 주위의 모두를 인정하지 않는 원고로부터는 강의와 학점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모아 30여명이 시험을 거부하였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학생들이 시험거부를 하게 만든 원고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가요.

10. (을제12호증의 4 제시) 이것은 수학과 4학년 전공필수과목인 위상수학1의 보충 강의 건으로 증인이 1995. 7.경 작성하여 총장에게 선처를 호소한 공문이지요.

10-1. 위 기재내용에 의하면, 담당교수(원고)와 학생들 사이의 원만치 못한 관계로 인하여 29명의 학생들이 F처리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원만치 못한 관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요.

11. 기타 신문사항